「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개정 의견 수렴 초안)」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공문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제도를 완비하기 위해, 본 부서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에 대한 개정을 조직하여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개정 의견 수렴 초안)」 및 그 제정 설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본 부서 웹사이트(http://www.mee.gov.cn) '의견 수렴' 항목에서 검색·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개인 모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2일 이전에 의견을 서면으로 본 부서에 회신하여 주시고, 전자 문서는 담당자 이메일로도 동시에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고체폐기물·화학품사 Fu Zixi(付子曦), Tian Yajing(田亚静)

전화: (010) 65645756, 65645790

팩스: (010) 65645787

이메일: chem@mee.gov.cn

주소: 베이징시 동청구 동장안가 12호

우편번호: 100006

담당자: 고체폐기물·화학품관리기술센터 Liu Xiaojian(刘晓建)

전화: (010) 84665574

팩스: (010) 84634708

이메일: liuxiaojian@meescc.cn

주소: 베이징시 차오양구 위후이난루 1호

우편번호: 100029

별첨:

의견 수렴 기관 명단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개정 의견 수렴 초안)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개정 의견 수렴 초안)」 제정 설명

생태환경부 판공청

2026년 6월 10일

(본 문서는 사회에 공개됨)

별첨 2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
(개정 의견 수렴 초안)

제1장 총 칙

제1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행위를 규범화하고, 신화학물질의 오염 위험을 과학적·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며, 환경 및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에 집중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공중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의 신청 및 접수, 심사 및 결정, 등록증의 사후관리 등 활동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신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화학물질

(2)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에서 신용도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화학물질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제정·조정하여 공표한다.

제4조 국가는 신화학물질에 대해 환경관리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사업단위는 생산·수입 전에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등록증 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은 원천 진입 허가, 위험 예방, 분류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지속성·생물 축적성·환경 또는 건강에 대한 높은 유해성을 지니거나 환경 내에 장기간 잔존하여 환경 및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한

다.

제6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전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업무를 총괄하고,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정책·기술규범 및 지침 등 부속 문서와 등록 심사 규칙을 제정하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의 정보화 구축을 강화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화학물질 오염위험 평가 전문가풀(이하 '전문가풀'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전문가풀은 화학·화공, 건강, 환경, 경제, 정책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심사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市) 이상 지방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관할 구역 내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사용하는 관련 기업사업단위의 본 방법 이행 상황에 대한 환경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 소속 화학물질 환경관리 기술기관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심사에 참여하고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구체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사용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화학물질의 오염 위험을 예방·통제하며, 야기된 손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신화학물질 오염위험 평가 및 제어 기술의 과학 연구와 보급·응용을 장려·지원하고, 환경 친화형 화학물질 및 관련 기술의 연구·응용을 장려한다.

제9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2장 등록 절차와 요건

제1절 신청 및 접수

제10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은 일반 등록과 간이 등록으로 구분한다.

신화학물질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일반 등록

증(이하 '일반 등록증'이라 한다) 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화학물질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간이 등록증(이하 '간이 등록증'이라 한다) 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되어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신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이어야 한다.

제11조 일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등록 신청서

(2) 신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건강독성학 및 생태독성학 특성 시험 보고서 또는 자료 (생태독성학 시험 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시생물을 사용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완료한 시험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신화학물질 오염위험 평가 보고서 및 그에 상응하는 오염위험 통제 조치

(4) 고위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신화학물질 활동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자료 및 신청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증

등록 신청 신화학물질의 전국 합산 연간 생산량 및 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등록 신청 신화학물질이 저관심 폴리머에 해당하거나, 신화학물질 단량체 또는 반응체 함량이 2% 이하인 폴리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료 제출이 면제되나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간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청인은 등록 신청 자료의 진실성·완전성·정확성 및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신청인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신청 자료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록 신청 시 이를 제출하고 영업 비밀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 안보, 중대한 사회 공공이익, 인체 건강 및 환경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영업 비밀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제출된 정보 보호 요구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는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2인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한 신화학물질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공동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등록량은 각 신청인의 신청 등록량의 합계로 산정한다.

국가는 신청인 간 등록 시험 데이터 공유를 장려한다.

제15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위한 시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시험기관은 법에 따라 검험·검측기관 자질인정을 취득하고, 화학물질 시험 관련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시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강독성학·생태독성학 시험기관은 또한 우수실험실관리규범(GLP)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은 자신이 발급하는 시험 결과의 진실성 및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화학물질 생태독성학 시험기관의 시험 상황 및 조건에 대한 감독 점검을 조직한다.

건강독성학 또는 생태독성학 시험 데이터를 발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외 시험기관은 국제 통용 우수실험실관리규범(GLP)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등록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완 신청 자료 전부를 제출한 경우 접수한다

(2)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기타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5영

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모든 내용을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료 접수일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청 자료에 즉시 수정 가능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신청 물질이 법에 따라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 자료 등에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접수 불가 결정을 통보한다

제2절 기술 심사와 결정

제17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일반 등록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풀 전문가 및 소속 화학물질 환경관리 기술기관에 기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기술 심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신화학물질의 명칭 및 표식

(2) 신화학물질 시험 보고서 또는 자료의 품질

(3) 신화학물질의 환경 및 건강 유해 특성

(4) 신화학물질의 환경 노출 상황 및 오염 위험

(5) 신용도 환경관리 실시 여부

(6) 오염위험 통제 조치의 적절성 여부

(7) 고위해 화학물질 신청 활동의 필요성

(8) 영업 비밀 보호의 필요성

기술 심사 의견에는 전항 규정 내용에 대한 심사 결론, 등록 허가 여부에 대한 건의, 환경관리 요건에 관한 건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 심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신화학물질의 오염 위험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의 자료 보완 기간은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간이 등록 신청을 접수한 후 소속 화학물질 환경관리 기술기관에 기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기술 심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신화학물질의 명칭 및 표식

(2) 영업 비밀 보호의 필요성

기술 심사 의견에는 전항 규정 내용에 대한 심사 결론 및 등록 허가 여부에 대한 건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 심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기술 심사를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의 자료 보완 기간은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일반 등록 기술 심사 의견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1) 불합리한 오염 위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일반 등록증을 발급한다. 고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 등록증 발급은 신청 활동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전호에 규정된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여 서면 통지한다

제20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간이 등록 기술 심사 의견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0조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고 화학물질 표식 정보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간이 등록증을 발급한다

(2) 전호에 규정된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신청인에게 이

유를 설명하여 서면 통지한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등록을 불허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여 서면 통지한다.

(1) 등록 신청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등 기만 수단을 사용한 경우

(2) 본 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의 요구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국가 산업 정책 등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등록 불가의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일반 등록 결정 전에 등록 예정 신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류명(類名), 신청인, 활동 유형, 신용도 환경관리 요건 등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기간은 3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등록 신청 접수 후 신속히 기술 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일반 등록의 기술 심사 기간은 4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이 등록의 기술 심사 기간은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관련 시험 보고서 또는 자료의 보완 제출을 통보한 경우, 신청인의 관련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술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영업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10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 심사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4조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증 유형

(2) 등록증 보유자 명칭

(3) 신화학물질의 한국어·영문 명칭 또는 류명 등 표식 정보

(4) 오염위험 통제 조치 (용도, 등록량, 활동 유형 및 기타 오염위험 통제 조치 포함)

(5) 환경 관리 요건

고위해 화학물질 및 지속성과 생물 축적성을 동시에 지니거나, 지속성과 독성을 동시에 지니거나, 생물 축적성과 독성을 동시에 지닌 신화학물질에 대한 일반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환경 관리 요건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신화학물질의 배출량 또는 배출 농도 제한

(2) 신용도 환경관리 실시

(3) 기타 환경 관리 요건

제25조 등록 신청 접수 후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은 법에 따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린 후 20영업일 이내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 변경, 말소 및 취소

제27조 이미 일반 등록증을 취득한 신화학물질이 본 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 보유자는 등록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보유자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량을 감소하거나 기타 오염위험 통제 조치를 변경하여 오염 위험을 더욱 낮추고자 하는 경우

(3) 신화학물질의 CAS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 등록증에 기재된 기타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증 보유자는 일반 등록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간이 등록증을 취득한 신화학물질에서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증 보유자는 등록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등록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보유자는 변경 이유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화학물질 CAS 번호 변경의 경우 증명 자료에서 변경 전후의 화학물질이 동일한 화학물질임을 충분히 논증하여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간이 등록 절차 및 기한을 준용하여 접수·기술 심사를 조직하고 등록증 변경 결정을 내린다. 신화학물질 CAS 번호 또는 기타 오염위험 통제 조치 변경의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전문가풀 전문가에게 기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변경 전후의 화학물질이 동일한 화학물질인지 판단할 수 없거나 오염 위험을 낮출 수 없는 경우 변경을 불허한다.

제29조 등록증 보유자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등록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증 보유자가 기만,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2)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 직원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또는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3)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취소의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사후관리

제31조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사용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판매·위탁 등 계약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하류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번호

(2) 신화학물질 등록 용도 등 오염위험 통제 조치

(3) 신화학물질 환경 관리 요건

신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공급자에게 전항에서 규정한 신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사용하는 기업사업단위는 오염위험 통제 조치 및 환경 관리 요건을 이행하고, 신화학물질 활동 상황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 신화학물질 활동 일시, 수량, 용도 및 기타 오염위험 통제 조치와 환경 관리 요건의 이행 상황 등을 성실히 기록하고,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활동 기록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제33조 일반 등록 신화학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공식 웹사이트 또는 기타 공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염위험 통제 조치 및 환경 관리 요건의 이행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일반 등록증 보유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최초 수입 후 신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사업단위에 이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화학물질 최초 활동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사용하는 기업사업단위는 신화학물질의 새로운 환경 또는 건강 유해 특성 또는 오염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오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오염 위험을 제거하거나 낮추어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전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현황, 실제 생산 또는 수입 현황, 환경 배출 현황, 새로 발견된 환경 또는 건강 유해 특성 등에 근거하여, 오염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신화학물질에 대해 관련 생산·수입·사용 기업사업단위에게 관련 환경 또는 건강 유해성, 환경 노출 데이터 정보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소속 화학물질 환경관리 기술기관 및 전문가풀 전문가에게 기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해당 등록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현황, 오염위험 통제 조치 및 환경 관리 요건, 최초 활동 현황 등 정보를 성급(省級)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해당 정보를 시급(市級)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市)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사업단위가 요구에 따라 등록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록 사항의 진실성,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및 본 방법 기타 관련 규정의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감독 점검 상황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정보 시스템에 적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사용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감독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일반 등록증을 취득한 신화학물질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화학물질은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하지 않는다.

(1) 전국 합산 연간 생산량 및 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2) 신용도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료 제출이 면제된 경우

(4) 본 방법에 따라 일반 등록증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제4장 법적 책임

제38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시(市)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등록증의 요건에 따르지 않고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

(2) 등록증 없이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거나, 등록증 없는 기업사업단위가 생산·수입한 신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39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기만,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취득한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령에 따라 신용 연동 제재를 실시하고, 3년 이내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신청을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40조 전문가풀 위원이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심사에서 허위 행위를 하거나 기타 직무 태만 행위로 심사 결과가 심각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그 전문가풀 위원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제41조 신화학물질 신청을 위한 시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험기관이 허위 보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해당 시험기관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험기관의 직접 책임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령에 따라 신용 연동 제재를 실시하고, 3년 이내에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하거나 관련 책임자가 참여하여 발급한 시험 보고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5장 부 칙

제42조 수입된 신화학물질이 세관 특수 감독 구역에만 보관되고 어떠한 가공도 없이 전부 수출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학 연구 및 검험·검측·계량·모니터링 등 기술 서비스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방사성 화학물질에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3조 본 방법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고위해 화학물질: 지속성·생물 축적성·독성을 동시에 지닌 화학물질, 고지속성과 고생물 축적성을 동시에 지닌 화학물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 또는 건강 유해성을 지닌 기타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신화학물질 사용: 신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며, 무역·

창고 보관·운송 등의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구 환경보호부령 제7호) 및「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관련 등록증은 본 방법 시행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다만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에서 신용도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화학물질을 허용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신용도에 대한 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비안(備案)을 처리한 경우, 비안 신청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증 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방법 시행 전에「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에 따라 접수된 등록 신청은 본 방법 시행 후에도 계속「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 본 방법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해석을 담당한다.

제47조 본 방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생태환경부가 발표한「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은 동시에 폐지된다.